

#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원본)

□ : 일반응시자   □ : 면제자   (해당되는 란에 V표시)

2011년 제    회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자격검정을 받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소정의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    월    일    성 명    \_\_\_\_\_

※ 란은 수검자가 기재하지 않으며, 굵은선 안에만 기재합니다.

① 수검번호	※										
② 종목및등급	<b>實踐禮節指導師</b>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이사장 귀하					
③ 성 명	(한글)	(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주민등록지)						⑥ 전화번호 및 E-mail	일반전화 (    ) 휴대폰 E-mail				
⑦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4년제대학 <input type="checkbox"/> 2년제대학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기타		과	<input type="checkbox"/> 재학 <input type="checkbox"/> 졸업 <input type="checkbox"/> 수료		⑧ 예절관련 실무경력		년			
<b>⑨ 면 제 신 청 (해당자만 기입)</b>											
⑩ 필 기 시험면제	(    )년 제 회(    월 일 시행) 필기시험 합격					⑬ 수검 번호					점 수 확 률
⑪ 예절관련 자격취득	종목 및 등급		자격중 번호	합 격 자						(인)	
⑫ 면제과목	※	※	※	※	※	※	※	※	※	※	

편 철 부 분	<b>제    회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부분)</b>										⑳  사    진 (3.5cm × 4.5cm)	
	⑭ 수검번호	※										
	⑮ 종목 및 등급	<b>實踐禮節指導師</b>										
	⑯ 성명			⑰ 주민등록 번호								
	⑰ 면제과목	※	※	※	※	※	※	※	※	※		
⑱ 연락가능주소 또는 단체기관명						⑳ 연락가능 전화번호	일반전화 (    ) 휴대폰					

<b>제    회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자격검정 수검표</b>										㉑  사    진 (3.5cm × 4.5cm)	
㉒ 수검번호	※										
㉓ 종목 및 등급	<b>實踐禮節指導師</b>										
㉔ 성 명			㉕ 주민등록 번호								
2011년    월    일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이사장											

## 수검원서 기재요령

- 이 원서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사진란 ㉔ ㉕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규격의 동일원판으로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제출일자 : 수검원서 원본과 수검표에 제출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주소 : ㉙는 주민등록지, ㉚은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되 통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최종학력 ㉗ : 최종 출신학교, 재학, 졸업, 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V]표를 하고 전공학과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실무경력 ㉘ :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과 관련이 있는 실무경력을 기재합니다.
  7. 면제신청 ㉛ : 실천예절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한 필기시험 면제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 필기 시험면제 ㉜ : “예” 2010년 제20회 (11월 13일 시행) 필기시험 합격, 수검번호 200099
    - 나. 면제과목 ㉝ ㉞ : 실천예절지도사 자격종목과 관련있는 예절관련자격을 취득한 자만 기재함
  8. 예절관련 자격취득 ㉟ : 기 취득한 예절관련 자격종목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되,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의 과목면제에 해당하는 자격종목명, 자격증번호, 합격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검원서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수검원서, 수수료 및 기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회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수검자 유의사항

1. 수검자는 수검(필기·실기 시험)시부터 자격증 교부시 까지 본 수검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실천예절지도사 자격 관리 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하여 1차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2. 시험장소는 시험시행 1주일전에 (사)범국민예생활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3. 수검자는 필기시험(실기시험 포함)시 (1) 수검표 (2) 주민등록증 (3) 흑색볼펜 등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4.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됩니다.
  5. 응시자는 당해 실기시험의 발표전까지는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합격자 발표 안내 : 인터넷: <http://www.yejeol.or.kr>
- <수검자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검정장소에 오시기 바랍니다.>